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2. 5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2. 7

다. 상 정 일 자 : 제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98.2.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및 장림1동사 신축비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대 상 사 업 :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및 장림1동사 신축
- 지방채 발행금액 : 1,450,000천원
- 차 입 선 : 한국지방재정 공채회(청사정비 기금)
- 발 행 조 건 :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거치기간은 무이자)
- 차 입 시 기 : 98.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지방채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낙후 지역의 전략적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이 급박한 사항이나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지방채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는 실정임.

또한 그 혜택이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공공재의 재원을 지방채 제도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세대간 부담의 공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법으로서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우리구의 주요정책 사업인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사업비 12억5천만원과 장림1동사 신축사업비 2억원을 지방채로 발행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효율화를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